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3978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대전광역시장
변 론 종 결	2016. 2. 24.
판 결 선 고	2016. 3. 23.

주 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9년분,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506,820원,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058,6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2009년분,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961,870원,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611,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가 2007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모두 C 주주들의 지분율이 '원고 A 28.75%, 원고 B 22.5%, F 26.25%, G 22.5%'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C이 2009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537,660원 및 가산금 1,170,670원,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5,859,740원 및 가산금 1,300,750원,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393,660원 및 가산금 617,48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형제간으로 위 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C 주식의 51.25%(= 28.75% + 22.5%)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10.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이 체납한 2009년분,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4. 7. 31.로 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원고	과세연도/세목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 부과액(원)
A	2009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304,570	336,560	1,641,130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684,670	373,950	2,058,620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688,170	177,520	865,690
B	2009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20,960	263,410	1,284,370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318,430	292,680	1,611,110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38,560	138,940	677,500

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9. 11. 원고들에게 납부기한 이후의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최고를 하였다.

원고	세목/과세연도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 부과액(원)
A	2009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304,570	367,870	1,672,440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684,670	414,380	2,099,050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688,170	194,030	882,200
B	2009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20,960	287,890	1,308,850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318,430	324,300	1,642,730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38,560	151,870	690,4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07. 11.경 H에게 자신의 C의 주식 전부를 대금 2,000만 원에 양도하고 2007. 11. 23.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부터 C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C의 2009년분,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C의 주식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1) 원고들은 형제간이다. 원고 A은 2002. 10. 16. C의 대표이사로, 원고 B은 같은 날 감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주식 지분율은 28.75%, 원고 B의 주식 지분율은 22.5%이었다.

2) 원고들은 2007. 11. 23. C의 대표이사와 감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C의 대표이사 등 임원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취임일	임원		사임일
2007. 11. 23.	대표이사	H	2008. 4. 18.
	이사	I	
	감사	J	
2008. 4. 18.	대표이사	K	2009. 6. 3.
	이사	L	2010. 7. 21.
	감사	M	2010. 7. 21.
2009. 6. 15.	대표이사	N	2009. 8. 31.
2009. 8. 31.	대표이사	O	2010. 7. 21.
2010. 7. 21.	대표이사	L	2011. 1. 17.
2012. 12. 31.	청산인	K	

3) H은 2007. 11. 23.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7. 11. 20. 및 2007. 11. 22. 원고 A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H은 위 2,000만 원이 원고 A의 C 주식 및 면허의 양수대금이라고 기재한 확인증(갑 제8호증)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2007. 11. 23. 원고 A으로부터 C 주식을 양도받았고 그 이후부터 원고 A이 C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4) C의 주주총회가 2012. 12. 31. 개최되어 C의 해산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P사무소에서 등부 2012년 제17288호로 2012. 12. 31.자 주주총회의사록과 C 주주가 K(지분율 48%), L(지분율 40%), M(지분율 12%)이라고 기재된 주주명부를 공증받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았고 위 주주총회의사록에는 K, M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C은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고 법인해산등기를 경료하였다.

6) C의 청산인 K은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C 주식을 양도받아 C을 운영하였고 원고 A은 C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2007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모두 C 주주들의 지분율은 원고 A이 28.75%, 원고 B이 22.5%, F가 26.25%, G가 22.5%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2007. 11.경 H에게 C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있는데 H의 증언, H의 원고 A에 대한 송금 내역, C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변경 내역 모두 원고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C의 해산을 결의한 2012. 12. 31.자 주주총회회의록 및 그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C의 청산인 K도 원고들이 C의 주주가 아니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원고들이 2007. 11. 이후 C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2007. 11.경 H에게 C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C의 주식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C의 2009년분,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C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시 C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8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40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